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">4월 24일(수) 조간 (4.23. 12시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19. 4. 23. / (총 5매)	담당부서	아동학대대응과
과 장	김 우 기	전 화	044-202-3190
담 당 자	장 태 영 / 변 광 용		044-202-3191 / 3388

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

- 아동 관련기관(34만 649개) 운영·취업자 205만 8655명 일제점검 -
-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(<http://korea1391.go.kr>)에 결과 공개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5개 유관부처*와 함께 '18년 11월부터 '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(총 34만 649개)의 운영·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**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.

* △교육부 △국토교통부 △문화체육관광부 △법무부 △여성가족부

** 「아동복지법」 부칙 제2조에 따라 '14.9.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

○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*된다.

*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

○ 이번 점검*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·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**를 실시하였다.

- * 점검방법 :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(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)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·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
- **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△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△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

□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△운영자인 경우가 6명 △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.
- 시설유형별로는 △교육시설 8명(운영자 2, 취업자 6) △보육시설 4명(운영자 2, 취업자 2) △의료시설 3명(취업자 3) △기타시설 6명(운영자 2, 취업자 4)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.

□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·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·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.

-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,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.

※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

- ① 지자체장, 교육감·교육장의 폐쇄·해임 요구 →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→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·허가 취소, 과태료 부과처분

<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·조치 현황>

(단위 : 개소, 명, 건)

구분	적발 기관 수 및 인원					조치 현황		
	기관수	인원			조치완료	조치예정		
		계	운영자	취업자		인원	비고	
계	21	21	6	15	18	3	-	
교육	평생학습관	1	1	0	1	0	-	
	학원	7	7	2	5	7	0	
보육	어린이집	4	4	2	2	3	시설폐쇄	
의료	의료기관	3	3	0	3	3	0	
기타	관리사무소	2	2	0	2	2	0	
	수련시설	1	1	0	1	1	0	
	체육시설	2	2	1	1	1	1	시설폐쇄
	복지시설	1	1	1	0	0	1	시설폐쇄

□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* 누리집(<http://korea1391.go.kr>)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**한다.

*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,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·대응 사업 수행

**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26조의7에 따라 △점검기간·기관·인원 수 △적발기관 개수·명칭·대상자 수 △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

□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('17.12.20.시행)

<참고> 1.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 기관
2.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·확인 관련 법령

참고1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 기관

소관부처	아동관련 기관
교육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 ▶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▶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동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·교습소
문화체육관광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
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,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,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,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▶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▶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(동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) ▶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▶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▶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
여성가족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,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, 동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▶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▶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▶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,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▶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, 동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▶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▶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▶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동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, 동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, 청소년 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▶ 「청소년보호법」 제35조의 청소년보호·재활센터 ▶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
국토교통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(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)
법무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
참고2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·확인 관련 법령

내용	관련 법령
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	▶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①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(이하 "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"라 한다)은 ...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(이하 "아동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·확인	▶ 아동복지법 제29조의4(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·확인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...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... 연1회 이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
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적용 시점	▶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.
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조치 절차	▶ 아동복지법 제29조의5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.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. ③ 제29조의 4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·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▶ 아동복지법 제75조(과태료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2.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
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·확인 결과 공개내용	▶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(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·확인 결과 공개) ②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·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점검·확인 기간 2. 점검·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. 점검·확인 기관 수 및 점검·확인 인원 수 4.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, 명칭,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·군·구명,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.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